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22
----------	-----

2024. 10. 18.(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1일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유상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난 1월 충남 태안군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일가족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관심과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3,111명 → 2022년 3,655명 → 2023년 3,855명), 우리 충청북도 같은 맥락에서 소아 당뇨병 학생이 ‘2021년 97명 → 2022년 117명 → 2023년 142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안 제5조)
- 지원 범위·신청·방법(안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사무위탁(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당뇨병은 몸속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량 부족, 인슐린 작용의 저하 등으로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으로 발생 원인과 기전에 따라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하며 그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당뇨병의 유형별 구분

	제1유형 당뇨병	제2유형 당뇨병
원인	자가면역 등으로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분비에 장애 발생	인슐린 분비 및 작용의 결함으로 발생
발생연령	어린이나 20세 미만의 청소년기에 발생	40세 이후 발생
발병양상	갑자기 나타남	서서히 나타남
인슐린 분비	완전 결핍	감소되었거나 비교적 정상
치료	매일 인슐린 주사 치료	식사요법, 운동조절 후 치료되지 않으면 약물치료
사용약물	인슐린, 글루카곤	경구용 혈당강하제, 인슐린, 글루카곤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소아내분비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편집

- 아동·청소년의 경우 제1형 당뇨병이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최근에는 제2형 당뇨병 발생이 청소년기 전체 당뇨병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발병 빈도가 증가³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 비만과 과체중 관리를 위한 식습관 교육과 운동 지도를 통한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상태임
- 당뇨병은 실질적인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일평생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제1형 당뇨의 경우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당 쇼크와 함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음
- 이 같은 특성상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모두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큰 상태임

35)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자료(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 올해 초(2023. 1. 9.) 충남 태안군에서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일가족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재고와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지원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음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2021년 3,111명 → 2022년 3,655명 → 2023년 3,855명), 우리 충청북도 최근 3년간 제1형 당뇨병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2형 당뇨병 학생도 129명으로 파악되고 있어(2024. 9. 기준) 학교 교육활동 중 소아당뇨 학생 건강관리 및 치료 관련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현황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1	32	45	98	32	44	41	117	46	47	49	142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보건교육센터

-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

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및 지원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사무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에는 당뇨병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는 ‘학교’와 ‘당뇨병 학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본 조례에 따른 당뇨병 학생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충청북도 내 유치·중·고, 특수 및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에는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 교육감은 충청북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장으로서 건강상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학생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뇨병 학생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 학교장 또한 학생들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고 있는 학교운영의 총책임자로서 학교생활 중에 당뇨병 학생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본 조항의 필요성과 조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 본 조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당뇨병 학생 맞춤형 지원과 보호·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필요한 예산확보,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과 세부 사업추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당뇨병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항은 당뇨병 학생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인슐린 투약 관련 지원, 안전한 치료·관리 환경 조성,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과 같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 학생이 처한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다양하게 반영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적절한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특히,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평생 적절한 혈당 관리를 위한 혈당 체크와 인슐린 투약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의료비 일부(비용추계: 1인당 30만원)와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센서 등을 지원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생활 중에 혈당 확인이나 인슐린 투약이 수시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인슐린 투약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또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6조는 당뇨병 학생의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당뇨병 환자 중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조절이 안돼 평생 인슐린을 투약하며 엄격한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혈당이나 고혈당 쇼크 및 합병증 등으로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는 제1형 당뇨병은 법률상 「심뇌혈관질환법」의 관리 대상으로 되어있어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한당뇨협학회 등 의학과와 여러 당뇨병 환자 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를 희귀질환 대상으로 하고 장애로 인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희귀질환관리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제1형 당뇨병의 난치성 질환 인정 필요성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와 의료비 지급 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에 준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항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에 관한 심의를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에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당뇨병 학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는 당뇨병 학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였음
 - 본 조항은 현행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하던 당뇨병 학생 실태 조사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학생별 당뇨병 주요 특징 파악 등 당뇨병 학생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사업과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는 제5조의 지원사업과 제7조의 실태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당뇨병 학생 지원과 관련된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재 충북 도내 학교의 부족한 보건교사 및 보건 인력 배치 상황³⁶⁾을 고려해 볼 때 당뇨병 학생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당뇨병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당뇨병과 관련된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원할 도내 외부 전문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내의 협력 기관 개발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다. 종합 검토의견

36) 충북 보내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기간제를 포함한 보건교사 배치율은 83%이며, 특히,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36학급 이상 학교는 37곳 중 20곳에 만 배치되어 있어 배치율이 54.1%로 전국에서 배치율이 3번째로 낮은 상태임.(교육부가 2024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

- 본 조례안은 소아 청소년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당뇨병 예방과 관리, 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가 관계 부처와 의료단체 가는 정책을 추진³⁷⁾하고 있는 현 기조간에 당뇨병 환자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에 맞춰, 충청북도교육청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뇨병 학생의 건강관리와 치료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비추어 볼 때,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다만, 당뇨병 학생의 의료비 지원 범위와 의료비 지급 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에 준용하여 추진해야 하는 만큼, 당뇨병 학생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원 예산 수립과 지급에 관한 세심한 검토와 체계적인 지급 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7)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2023. 12. 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부는 소아당뇨 관리 기기 구입 부담 대폭 완화 및 기기 사용 교육 기회 확대를 조속히 시행. (2024. 1.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당노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당노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노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노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당노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노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당노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노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당노병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3. 당뇨병 학생 보호·관리체계 구축 방안
4. 재원 확보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5. 당뇨병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2. 당뇨병 학생 인슐린 투약 관련 지원
3.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치료·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 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 기기 사용 허용
5. 당뇨병 학생·보호자 대상 건강·학습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6.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연수
7.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범위·신청·방법) 당뇨병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제 8조에서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12. 3. 21.>
5. 삭제<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2. 1. 26.>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6. 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신설 2021. 6. 8.>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1. 26.]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 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 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보건교사의 직무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영양지도 및 관리
-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21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 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 의료급여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4호, 2024. 12. 23., 일부개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지원 및 환경구축, 연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2029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적용
-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기 추진 중인 사업은 비용추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2025년부터 기존 사업 확대 추진(2024년 예산액 총 1,790천원)
- 산정기준 (2024. 9월 기준)
 -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당뇨 관리를 위한 의료 치료/123명, 1인당 300천원)
 - 학교 응급키트 지원 <혈당측정기, 인슐린 주사용품, 소독용품 등> (28교/교당 1,000천원)

- 인슐린 접종 환경구축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15교/교당 2,000천원)

나. 추계 결과

-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474,500천원(연 94,900천원)
 -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연 36,900천원
 - 학교 응급키트 지원: 연 28,000천원
 - 인슐린 접종 환경구축 지원: 연 3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94,900	94,900	94,900	94,900	94,900	474,500
건강관리 지원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184,500
학교 응급키트 지원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140,000
인술린 접종 환경구축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94,900	94,900	94,900	94,900	474,5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